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60
------	------

2017. 9. 1.
기 획 경 제 위 원 회

I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8월 18일, 조상호의원외 12명

나. 회부일자 : 2017년 8월 2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17.9.1.)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조상호 의원)

1. 제안이유

- 직업교육훈련시설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

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등 사회 및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4개의 직업교육훈련시설의 교육비가 무상으로 운영됨에 따라, 취업의지도 없으면서 여러 군데 기술교육원을 전전하거나,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으면서 교육받는 과정 자체를 목적으로 다니거나, 일정과정의 기술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다른 과정으로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는 등 기술교육원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음.
- 이 같은 문제점과 폐해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바,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직업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생으로부터 교육훈련비·기숙사비 및 식비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조례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의 지속적인 중도포기자 발생, 취업의지 없이 무료 교육만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생의 증가 등 현재 기술교육원이 처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인 교육원의 운영을 위해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기술교육원 운영 현황

- 서울특별시(이하 “시”)는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취약계층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시의 동부, 중부, 북부, 남부 네 곳에 서울시 기술교육원(이하 “기술교육원”)을 두고, 212억원의 예산¹⁾을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전액 무료로 취업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서울시 기술교육원 현황〉

구 분	동 부	중 부	북 부	남 부
위 치	강동구 고덕동	용산구 한남동	노원구 상계동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위 탁 법 인	(학)경북대학교	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	(재)한국능력개발원	(사)엘림복지회
현위탁기간	'16.3.1~'19.2.28	'17.3.1~'20.2.29	'16.3.1~'19.2.28	'16.3.1~'19.2.28

1) 2017년 기준

- 기술교육원은 2016년 기준 134개 학과에 6,930명의 교육생이 입학하여 88%인 6,103명이 수료하였고(국가협력과정 포함), 정규과정 기준 62.1%, 단기과정 41.2%의 취업률을 기록한 대표적인 직업교육훈련시설임.

〈최근 3년간 기술교육원 훈련실적(수료인원)〉

(단위:명)

구 분	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계	14,044	4,662	4,927	4,455
정규과정	10,318	3,679	3,732	2,907
단기과정	3,726	983	1,195	1,548

※ '16년 국가협력과정 훈련실적(1,648) : 공동훈련센터(1,612), 국가기간전략(36)

- 그러나 기술교육원은 매년 중도탈락자 수가 증가하고, 취업을 위한 교육이 아닌 교육 수강 자체에만 치중하는 교육생의 증가, 여러 교육원의 학과를 전전하며 중복 수강하는 교육생의 발생 등 취약계층에게 기술교육을 통해 취업까지 연계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음.

〈최근 3년간 기술교육원 중도탈락자 수〉

(단위: 명, %)

구 분	2014			2015			2016		
	입학	중도탈락	탈락률	입학	중도탈락	탈락률	입학	중도탈락	탈락률
계	4,961	299	6.0	5,302	375	7.0	5,149	694	13.4

구 분	2014			2015			2016		
	입학	중도 탈락	탈락률	입학	중도 탈락	탈락률	입학	중도 탈락	탈락률
정 규	3,939	260	6.6	4,034	302	7.5	3,468	561	16.1
단 기	1,022	39	3.8	1,268	73	5.8	1,681	133	7.9

- 현재 기술교육원은 이러한 중도탈락자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교육생 모집시 정원의 10%를 추가로 선발하고 있으나, 이는 정원 보다 많은 수의 교육생이 교육을 받게 되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
- 기술교육원의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양질의 강의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다. 기술교육원 유료화의 타당성

- 현재 기술교육원이 처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시는 기술교육원의 교육훈련비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훈련비의 전부를 징수하는 것이 아닌 일부 비용을 징수 후 환급하는 교육훈련비 예치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기술교육원의 교육생 1인당 표준훈련비²⁾의 평균은 약 4백만원으

2)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비용 지원금액의 기준.

수강료와 교육훈련기관의 실 훈련비를 조사하여 직종별 훈련비 단가를 결정

로(2016년 1년 정규과정 기준),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표준훈련비의 10%이내(정규 40만원 이내, 단기 20만원 이내)에서 교육 훈련비 예치단가를 선정하고, 훈련생들에게 징수받은 훈련비는 교육 수료 시 50%, 취업 시 50%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임.

※18년부터 상반기 일부 인기학과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 예정

우선선발 대상자 및 위탁교육생 제외

- 강의에 대한 무성의한 수강태도를 가진 교육생들의 증가로 중도탈락자 수가 증가하고 수업의 분위기가 저하되는 현 상황은 기술교육원이 시의 지원에 의해 무상으로 운영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감되는 측면이 있음.
- 훈련비 유료화를 통해 기술교육원의 중도탈락자를 방지하고, 허수 없이 기술교육을 듣고자하는 열의있는 학생들만 교육을 수강함으로써, 강의의 분위기 및 교육의 질이 증가하여 실질적으로 기술교육의 효과가 증대되는 것을 기대해 볼만함.
- 그러나 현재 교육훈련생의 다수가 취약계층으로 교육훈련비용을 징수받을 경우 당초 기술교육원의 운영 취지와는 반대될 뿐만 아니라, 수료후 환급받을 수 있다하더라도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 기술교육을 통한 취업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계층 학생들의 수강포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또한 서울시 기술교육원은 건물의 노후화 및 홍보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바, 유료화될 경우 민간의 타 직업훈련기관과 경쟁우위에 설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유료화를 통한 경쟁력 약화는 결국 교육생의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음.

※ 정부의 폴리텍 대학 및 경기도의 기술학교, 부산광역시의 건설기술교육원 등 타 지역의 공공직업훈련기관은 무료로 운영중임

- 시는 2018년 예치제도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도입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며, 기술교육원 유료화에 따른 많은 우려를 넘어 양질의 교육을 통한 일자리연계로 청년 및 서울시민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교육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6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상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0
----------	------

발의년월일 : 2017년 8월 18일

발 의 자 : 조상호, 강감창, 김영한,
김용석(서초), 김인호,
김진철, 맹진영, 문형주,
박운기, 신건택, 이윤희,
이정훈, 최호정 의원(13명)

1. 제안이유

- 직업교육훈련시설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등 사회 및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4개의 직업교육훈련시설의 교육비가 무상으로 운영됨에 따라, 취업의지도 없으면서 여러 군데 기술교육원을 전전하거나,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으면서 교육받는 과정 자체를 목적으로 다니거나, 일정과정의 기술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다른 과정

으로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는 등 기술교육원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음.

- 이 같은 문제점과 피해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바,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직업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생으로부터 교육훈련비·기숙사비 및 식비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제1항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조(교육훈련비 등) ① 시장은 직업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생으로부터 교육훈련비·기숙사비 및 식비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6조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③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생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학한 경우 훈련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교육생의 입학을 취소하고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교육훈련비 등) ① 시장은 직업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생으로부터 교육훈련비·기숙사비 및 식비 등 <u>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u> 다만,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교육 훈련생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학한 경우 훈련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교육생의 입학을 취소하고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p>	<p>제6조(교육훈련비 등) ① 시장은 직업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생으로부터 교육훈련비·기숙사비 및 식비 등 <u>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u></p> <p>② 제6조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p> <p>③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